

의안번호	제4호
의결연월일	2022. 7. 29.

-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7. 14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2. 07. 14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2. 07. 21.
제28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임호빈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청년정책 사업 추진 대상 확대(안 제17조제4호다목)
 -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신규사업 신설
-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개정(안 제18조제1항)
 - (현행)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
 - (개정안) 청년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
-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 지급 근거 신설(안 제18조제2항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완호)

- 본 조례안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청년기본법」의 목적과 내용을 기초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자기계발 등 생활안전 비용 지원을 열거하고, 지원 방법을 지역화폐와 현금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는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